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가합53326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도기영, 안형윤

피고1. A

2. B

3. C

4. D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혁

변론 종결2021. 9. 10.

판결 선고2021. 12.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905,315,065원과 그 중 898,858,314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나. 피고 A, B은 각 172,009,211원과 그 중 각 171,903,021원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각 2020. 6. 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 D과 피고 A 사이에 2019. 9.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 D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9. 9. 6. 접수 제40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 D과 피고 A 사이에 2019. 9.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 D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9. 9. 6. 접수 제7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
법인이고, 피고 A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피고 A의 아들이고, 피고 D은 피고 A의 조카이다.

나.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E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제3조(보증료 등의 납부)

① E는 원고가 제1조 제1항의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납부하겠으며, 보증료율(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연율 3.0%)·계산방법·납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E와 피고 A, B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② E와 피고 A, B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2) E는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F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았고,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2010. 2. 25.자 보증의 보증기한 및 보증금액이 각각 2020. 2. 14. 및 900,000,000원으로, 2016. 11. 15.자 보증의 보증기한이 2019. 11. 25.로 각각 변경되었다.

2010.02.25.	F은행	G	2011.02.25.	1,000,000,000원(1,250,000,000원)
2016.11.15.	중소기업은행	H	2017.11.15.	340,000,000원(400,000,000원)

3) 피고 A, B은 원고와 E 사이의 2016. 11. 15.자 보증에 관하여, E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피고 A, B이 각 170,000,000원과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액(또는 가산금액) 및 이에 더하여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에 보증채무이행금액 중 연대보증금액이 해당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원고는 F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보증사고통지를 받고 2020. 3. 13. F은행에 903,355,834원, 2019. 11. 28. 중소기업은행에 343,806,043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0. 2. 25.자 보증과 관련하여 4,497,520원을 변제받았다.

라. 피고 A의 부동산 처분

피고 A은 2019. 9. 4.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합계 25,00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합계 7,000,000원에 각 매도(이하 위 매매계약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9. 9. 6. 접수 제40210, 7588호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E의 구상금채무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변론종결일 현재, 2010. 2. 25.자 보증과 관련하여 대위변제금 잔액 898,858,314원(= 대위변제금 903,355,834원 - 변제받은 4,497,520원), 확정된 지연손해금 1,228원, 법적절차비용 6,455,523원(= 지출 6,570,560원 - 회수 115,037원)이 남아 있고, 2016. 11. 15.자 보증과 관련하여 대위변제금 343,806,043원(= 원금 340,000,000원 + 이자 3,806,043), 추가보증료 212,380원이 발생하였으며, 위 각 보증과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E를 대신하여 F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게 E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A, B은 2010. 2. 25.자 보증과 관련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315,065원(= 대위변제금 잔액 898,858,314원 + 확정된 지연손해금 1,228원 + 법적절차비용 6,455,523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898,858,31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3. 13.부터, 2016. 11. 15.자 보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각 172,009,211원2) [= 연대보증금액 170,000,000원 + 이자 1,903,012원3) + 추가보증료 212,380원) × 1/24)]과 그 중 대위변제금 각 171,903,012원(= 원금 170,000,000원 + 이자 1,903,01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1.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6. 8.까지는 보증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원고가 E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약 3개월 전에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 D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다. 이후 원고가 E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행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E와 보증약정을, 피고 A와 연대보증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3개월 내지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원고는 F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보증사고통지를 받고 2020. 3. 13. F은행에 903,355,834원, 2019. 11. 28. 중소기업은행에 343,806,043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 ③ E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6일 뒤인 2019. 9. 10.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390).

2) 피고 A의 채무초과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A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A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합계 3,921,99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 종로구 토지와 그 지상건물	1,349,940,000
2	이 사건 각 임야	32,000,000
합계	1,381,940,0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 D의 주장

이 사건 각 임야는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J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재산으로 피고 A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 A은 종중 재산의 보존을 위해 피고 C,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이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종중이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거나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실질적 소유자로서 행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각 임야를 피고 A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면, 피고 C, D이 피고 A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위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각 임야가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이라면 피고 A이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C,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야가 이 사건 종중이 A에게 명의신탁 한 재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C, D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D의 항변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C은 피고 A의 아들이고, 피고 D은 A의 조카이어서 위 피고들이 피고 A의 채무 현황이나 재산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A이 대표이사로 있던 E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6일 후 파산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이 피고 A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 D 명의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형석

판사박상인

판사김태진

별지

- 1) 원고의 2021.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172,009,221원'은 '172,009,211원'의 오타로 보인다.
- 2) 원 미만은 버림.
- 3) 340,000,000원에 대한 이자 3,806,043원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 4) 보증채무이행금액 340,000,000원 중 연대보증금액 170,000,000원이 해당하는 비율.